#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u>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100603] [yogurberry.co.kr] 
 YOQUIDERTY
 [정보공개시 중국단조 2000010000]
 [5.10
 [Info@yogurberry.net]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요거베리

# 정보공개서

요거베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04 . 29 .

# 요거베리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 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 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 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 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 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 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416호

대표전화: 02-3281-3688 팩스번호: 02-3281-6377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 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요거베리[Yogurberry]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416호				
(조)중러	법인 설립등기일 <sup>①</sup>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휴럼	2020.03.31		2020.03.31	김진석	02-3	3281-3688	02-3281-6377
	법인등록번호 110111		1-7442710	사업자등록	번호	425-	86-01594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sup>①</sup>	영업표지	주 소			
			서울 금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416호		
대표이사	김진석	Yogurberry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02-3281-3688	02-3281-637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 금천-	구 가산디지털2로	115, 416호	
부사장	김진성	Yogurberry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진석	02-3281-3688	02-3281-6377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 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해당없음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요거베리]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sup>①</sup>	요거베리 [Yogurberry]	요거베리(YogurBerry)는,요거트(Yogurt)와 과일의 열매를 뜻하는 Berry의 합성어입니다. 매장에서 바로 만든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토핑 하여 먹는 요거베리의 건강하고 자연친화적인 제품 컨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 호 <sup>©</sup>	요거베리 00점	지역명 또는 상권의 명칭에 따라 부여합니다.	
상표(서비스표) <sup>®</sup>	yogurberry Jogurberry	상표 등록번호: 41-0170174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sup>①</sup>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sup>②</sup>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38,908,802	31,956,909	6,951,893	76,768,038	7,448,210	1,599,729
2022년	55,144,695	21,129,714	34,014,982	64,095,106	-2,132,711	-1,645,499
2023년	63,429,893	26,377,707	37,052,186	71,204,402	1,427,130	2,106,989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sup>①</sup>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sup>②</sup>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sup>3)④</sup>			
る。日本小	인도	매출액	상한	하한	
	2021년	-			
,요거베리	2022년	_			
	2023년	_			

# 6. 가맹본부의 임원 $^{\odot}$ 명단 및 사업경력 $^{\odot}$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17121113	-1 =	-1 T101		사업경력	
관련여부 <sup>③</sup> 	이름	현 직위	기간 <sup>@</sup>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김진석	대표이사	2005.08. ~ 현재	(주)휴럼 대표이사	경영 <del>총</del> 괄
관련 임원	김진성	부사장	2006.01. ~ 현재	(주)휴럼 부사장	업무총괄
	김진흥	전무이사	2011.01. ~ 현재	(주)휴럼 전무이사	영업총괄
	정상준	상무이사	2014.09. ~ 현재	(주)휴럼 상무이사	관리총괄
	김봉균	상무이사	2006.02. ~ 현재	(주)휴럼 상무이사	생산 <del>총</del> 괄
-1 = 1 0 1 0 1	이규문	상무이사	2017.07. ~ 현재	(주)휴럼 상무이사	리테일 영업
가맹사업 비관련	송효섭	이사	2013.11. ~ 현재	(주)휴럼 이사	재무관리
임원	조재영	이사	2020.01. ~ 현재	(주)휴럼 이사	연구개발
	임석영	이사	2022.01. ~ 현재	(주)휴럼 이사	메디칼영업
	장성훈	감사	2020.08. ~ 현재	(주)휴럼 감사	감사
	최정일	사외이사	2021.03. ~ 현재	(주)휴럼 사외이사	
	송태섭	사외이사	2021. 07. ~ 현재	(주)휴럼 사외이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sup>①</sup>
2023년 12월 31일	9	3	13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sup>①</sup>	가맹점/직영점의 수 <sup>©</sup> 2021.12.31 2022.12.31 2023.12.31	
해당없음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sup>①</sup>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yogurijerry	상표	2007.08.31. 출원 2008.07.08. 등록	출원 제 2007-0023259호 등록 제 0170174호	김진석	2018.07.08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田. 가맹본부의 [요거베리] 가맹사업 현황

1. (요거베리)을 시작한 날: 2005년 08월 26일

# 2. (요거베리)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후스타일	요거베리	김진석	2005.08.26.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2017.04.01.	416
 (주)휴럼	요거베리	김진석	2017.04.01.~현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十/赤音	_ <u>파</u> 기메니	급선극	2017.04.01.~ 연세	416

# 3. (요거베리) 업종

영업표지	업종			
요거베리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아이스크림, 빙수	요거트아이스크림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요거베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2021.12.3	1.	2	2022.12.3	1.	2	2023.12.3	1.
시력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_	_	_	-	_	_	-	_	_
서울	_	_	_	-	_	-	-	_	_
부산	-	_	-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1	_	_	_	_	_	-	_	_
광주	1	_	_	-	_	_	-	_	_
대전	-	_	-	_	_	_	-	_	_
울산	-	_	_	_	_	_	_	_	_
세종	_	-	_	-	_	_	-	-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ı	_	-	_	_	_	-	_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	_	_	_	_	_	_	_	_
전북	_	-	_	_	-	_	_	-	_
전남	_	-	-	_	_	_	-	-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	-	_	_	_	_	_	-	_
제주	1	_	_	-	_	_	-	_	_

# 5. 바로 전 3년간 [요거베리]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sup>①</sup>	계약 해지 <sup>②</sup>	명의 변경 <sup>③</sup>	연말
2021	_	_	-	-	-	-
2022	_	_	-	-	-	-
2023	-	-	-	-	-	-

[요거베리]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 6. [요거베리]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요거베리]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1111)		
그브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sup>®</sup>	가맹점/직영점의 수 <sup>②</sup>		
一七	영화/이급	るも土川	등록번호	<u>п</u>	2021.12.31. 2022.12.31. 2023.12.31.		
	해당없음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sup>①</sup>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4}$ 사정기 $^{2}$

[요거베리]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sup>3</sup>.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	023년 가맹	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 매출액		
지역 <sup>4</sup>	2023년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프 매출액(		연간 <sup>표</sup> 매출액(		비고 <sup>®</sup>
시역 <sup>*</sup>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sup>®</sup>	-							
서울	_	해당없음						
부산	_	해당없음						
대구	_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_	해당없음						
대전	_	해당없음						
울산	_	해당없음						
세종	_	해당없음						
경기	_	해당없음						
강원	_	해당없음						
충북	_	해당없음						
충북 충남	_	해당없음						
전북	_	해당없음						
전남	_	해당없음						
경북	_	해당없음						
경남	_	해당없음				·		
제주		해당없음						

-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 것입니다.
- \* 매출액 산정 기준

[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공급액 x 추정비율(5.0)]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 사업자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물품 공급액을 감안하고, 요거트아이스크림과 음료, 커피류의 점유율이 약 70-80%일 때 물품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인걸로 보이므로 매출액 추정비율을 5.0으로 산정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8. [요거베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요거베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sup>①</sup>	평균 영업기간 <sup>©</sup>
2023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sup>①</sup>의 일반 정보

당사는 [요거베리]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sup>②</sup>	상호/명칭 <sup>③</sup>	주 소
	해당	강없음 S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 선전비로 사용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가맹사업[요거베리]이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카페원료유통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비용은 당사의 전 사업영역에 대한 광고 및 판촉비용이며, 이중 일부 가맹사업과 관련된 광고 및 판촉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구분 <sup>①</sup>	수단 <sup>②</sup> 기간 <sup>③</sup>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5,419,356		_		
	소계	소계	5,419,356		_		
	(비공개)	연중	(비공개)		_	(비공개)	
   광고	(비공개)	연중	(비공개)		_	(비공개)	
お <u>ル</u>	(비공개)	연중	(비공개)		_	(비공개)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연중	(비공개)				
	소계	소계	_		_		
판촉	(비공개)	연중	_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우리은행] 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우리은행	가산IT금융센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77	02-857-976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휴럼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 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sup>①</sup>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 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요거베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sup>①</sup>	금액 <sup>©</sup>	지급 기한	반환조건 <sup>③</sup>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5,500 ]				
영업비빌 전수비	2,200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기술전수 후 소멸	
영업표지 사용비	1,100	계약체결 후 3일이내	계약해지 (소멸되지 않는	기간만료시 소멸	
교육비	2,200		비용에 한정)	교육 후 소멸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sup>①</sup>	금액 <sup>©</sup>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sup>③</sup>	비고
총계	[3,000]			
(현금)보증금	3,000	계약 체결 후 3 일 이내	잔존채무, 손해배상액을 청산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	물품보증금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8,500		
가맹비	5,500		
(현금)보증금	3,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sup>①</sup>	지급대상 <sup>②</sup>	금액 <sup>③</sup>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sup>©</sup>
총계		[68,300~106,400]	2,732~ 4,256			기준면적: 25평
아이스크림기계		4,000~15,000	330~600	설치 5일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냉장고		2,000~2,800	80~112	설치 5일이전	공사 전 계약취소	
커피머신 및 주변기기		5,000~8,000	200~320	설치 7일이전	공사 전 계약취소	
베이커리기기	가맹본부	2,800~3,100	112~124	설치 5일이전	상품 미공급시	
매장인테리어		40,000~55,000	1,600~ 2,200	내부 인테리어 완공 후 1주일 이내	설치 전 계약취소	
간판		6,000~8,000	240~320	설치 7일이전		
기타 초도물품		3,500~4,500	140~180			
냉난방기	직접구매가능	_	_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5,000~ 10,000	200~400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개점 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 비용 제외)	교육비, 소모품비 가맹비 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표에 명시된 내역 외에 추가시설공사 및 인. 허가비용, 비품 등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인테리어(33㎡기준, 19,800천원 소요예상)등은 매장 면적 및 공사기간, 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의 경우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소요 비용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셔야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sup>①</sup>	선정 기준 <sup>©</sup>
	*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 의 여부를 구함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2-3281-3688)	* 가맹희망자가 직접 입지를 정할 경우 그 입지에 대해 본사 담당자가 현 장조사 등 시장분석을 한 후 상호 동의하에 입지를 결정합니다.
	<ul><li>* 가맹 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li></ul>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sup>®</sup>	계약ㆍ채용 기준 <sup>©</sup>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요거베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금액(천원)	8,500	총액의 10%	40%	40%	1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7일	계약일+15일	계약일+1월
비고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급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3,000원]				
상표사용료	(주)휴럼	해당 없음				
리스료		해당 없음				
광고 분담금	(주)휴럼	아래참조				
교육훈련비	(주)휴럼	_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	해당 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 없음				
리모델링 비용	-	해당 없음				
재고관리 비용	(주)휴럼	해당 없음				
회계처리 비용	-	해당 없음				
POS 사용료	(비공개)	월 33,000원	다음월 5일			

\*\*광고분담금은 일반적인 경우 가맹본부가 부담하지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광고시안 및 방법, 비용의 부담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고지하며, 특별한 경우에 다음 각호에따라 광고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고자할 경우 가맹본부의 승낙을 받아야하며, 비용은 해당 가맹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

- 상품 광고의 경우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각각 50:50
- 상품광고+가맹점 사업자 모집광고의 경우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각각 60:40
- 가맹점 사업자 모집광고의 경우는 가맹본부가 모두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sup>①</sup> (기준: 2023년)	내용 <sup>②</sup>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sup>®</sup>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sup>®</sup>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영업비밀전수비, 오픈교육비 등과 같이 소멸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영업표지사용료의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 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귀하 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지급하여야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신규계약으로 요청할 경우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채권,채무,계약위반에다른벌칙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 양수도)를 그대로 승계할 경우 잔여계약기간이 인정되며, 가맹비 중 영업비밀전수비, 오픈교육비와 보증금 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영업표지사용료는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금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서에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 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 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100,000원의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와 관련한 운영메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계약해지 및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가 제 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품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④ 귀하가 공급받은 상품 중에서 하자가 없는 상품은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사는 주문 당시의 공급가격을 그 대가로 지급합니다. 단, 하자가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반환여부 및 그 가격을 정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요거베리]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요거베리]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sup>①</sup>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sup>②</sup>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sup>®</sup>	경제적 이익의 내용 <sup>®</sup>	비고
		해당없음		
	7	9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요거베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sup>①</sup>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sup>©</sup>	그액 <sup>®</sup>	ਖ] <b>ਹ</b> ⁴
			해당없음		
		계			

2) 당사가 [요거베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	<u>0</u>		
		계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거트 과일빙수			
생과일 요거트주스			
주스 & 스무디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	1회 위반 : 구두 경고	
베이글	품을 판매할 수 없음.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케이크		- 1 10 112 11 11 11	
와플			
커피 & 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요거트아이스크림 1인분	2,800		
요거트아이스크림 2인분	5,300		
요거트아이스크림 3인분	7,300		
한컵요거트	2,000		
토핑 3가지	500		
토핑 6가지	1,000		
요거트과일빙수 1인분	3,500		
요거트과일빙수 2인분	6,500		
요거트과일빙수 3인분	8,500		
요거트주스(딸기,바나나 외)	3,000		
바나나, 키위, 토마토주스	3,000		
망고, 그린애플 스무디	2,500	버거기 휴레이키에	0010 100] 키즈
아이스티 레몬, 복숭아	2,500	변경시 홈페이지에 공지	2019.12월 기준
미니케익+ 아메리카노	7,500	0/1	
미니케익 +주스	7,900		
미니케익+아이스크림1인분	8,100		
미니케익+아이스크림2인분	10,800		
미니케익+아이스크림3인분	12,900		
아이스크림+베이글+아메리카노	4,900		
요거트아이스크림+베이글	3,800		
베이글+아메리카노	3,500		
베이글+주스	3,900		
베이글	1,500		
요거베리 미니케익	6,000		
에스프레소	1,900		

아메리카노	2,100
카페라떼	2,500
카푸치노	2,500
카페모카	2,800
카라멜모카	2,800
아이스아메리카노	2,300
아이스 헤이즐넛	2,700
아이스라떼	2,700
아이스모카	3,000
아이스 카라멜모카	3,000
아이스바나나라떼	3,000
아이스 녹차라데	3,000
녹차라떼	3,000
시나몬 코코아	3,000
홍차,녹차,허브차	3,000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 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 음과 같습니다.

EOST OVE HOU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sup>②</sup>	
동일한 업종 범위 <sup>①</sup>	가맹본부	계열회사
요거트아이스크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맹사업	요거베리	해당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sup>①</sup>	설정방법 <sup>②</sup>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5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2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유동인구가현저히변동되는경우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현저히변동되는경우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유지하는 것이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 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 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요거베리'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요거베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sup>①</sup>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sup>②</sup>
2023	0%	0%	12%	88%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①</sup>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sup>
2023	5%	95%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요거베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ш / Ч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 기명본부가 계약조선 현경을 시원으로 공사이었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었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_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_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u>예→B, 아니오→</u> ®	D 100 D 0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Daay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L. 경기가 합의하의 계곡을 근표하기의 건경된 고진으로 되지 가경계의 제를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 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7조1항
○ [요거베리]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물품을 가공하거나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제조한 물품을 판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물품 대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품질관리 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조 1항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이 계약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노후된 점포 설비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o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한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ul>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li> <li>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li> </ul>	5.	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당사는 귀하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sup>®</sup>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sup>①</sup>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sup>②</sup>	양도 절차 <sup>®</sup>	비고 <sup>④</sup>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ㅁ이ᆞ저ㅠ게바티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인수 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신규 계약을 원하면 당사가 검토후 양수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 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 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sup>①</sup>	가능 여부(조건) <sup>2</sup>	이전 범위 <sup>3</sup>	절차 <sup>@</sup>	기타 의무사항 <sup>⑤</sup>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I 보드 권리이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가맹점사업자, 상속인, 가맹본부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I 보이이 시지야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가맹점사업자, 대리인, 가맹본부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요거베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sup>①</sup>	경업허가 절차 <sup>©</sup>	비고 <sup>③</sup>
○ 요거트아이스크림 또는 관련 음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경업을 허가하	문의: 점포개발팀
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종,	지 않습니다.	(02-3281-3688)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요거베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2:00 12시간	일요일, 공휴일 제외영업	문의: 점포개발팀 (02-3281-36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sup>①</sup>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sup>©</sup>	대체 가능 인력 <sup>3</sup>	비고 <sup>④</sup>
1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요거베리]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н	고나그 사가	부딩	計비율	H 다. 저 귀	ען דו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71-7	상품	50%	50%	과그리 ㅂ다그 이 리ㅇㅂ기 쳐다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가맹점모집 가맹점 가맹점 사업자모집	60%	40%	광고비 분담금은 다음분기 첫달 말일까지 청구하고, 2주이내에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100%	_	분담금을 납부하여야함.			
개별 행사	지역내 행사	행사의 형태마다 다르며, 본사와 가맹점주의 비용협의가 이루어지면 시행		비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않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 내용에따라 개별분담.	개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 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 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 또는 판촉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가맹본부에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 기간을 경과한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합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6일 내외	[68,3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6	-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1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우리은행 가산IT지저점 가맹금 예치	D-29(1일)	8,5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0,000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20,0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9,800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sup>®</sup>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 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기선 사유 <sup>0</sup>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sup>②</sup>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sup>®</sup>	지급절차 <sup>®</sup>	비용부담 제외사유 <sup>⑤</sup>	비고
o점포의 시설, 장비,	ㅇ간판교체 비용	o점포의 확장 또는	o가맹점사업자의	o점포환경개선일	
인테리어 등의	에서 공 에어	이전을 수반하지	비용 청구(공사	로부터 3년 이내에	
노후화가 객관적	(장바잡임 교체	않는 점환경1선	계약서 등 공사	가맹본부의 책임	
으로인정하는경우	비용을 제외한	: 20%	비용을 증빙할	없는 사유로 계약이	
o위생이나 안전의	실내건 <del>축공</del> 사에	o점포의 확장 또는	수았세해	종료(계약의 해자)	
결함으로 인하여	소요하는 알레이 내용	이전을 수반하는	→ 90일 이내에	영양도 포함되는	
가맹업의 통설을	단, 가맹사업의	점포환경개선	기맹본부 부담액을	경우 가맹본부	
유하기 어랍니	통일성과 무관하게	: 40%	기맹점사업자에게	부담액 중 잔여	
정상적인 영업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기간에 비례하는	
현저한 지장을	추가 광를 살이		(단, 가맹본부와	부담액은 지급취	
주는 경우	함에 따라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간	아니하거나 이미	
	비용은 제외)		별도의 합마가 있는	지급한 경우에는	
			경우 1년의 범위내	환수 가능	
			에서 분화급가능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 맹 본 부 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 경 개 선 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		

			급  <분환지급시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있는서류첨뷔) → 3차에 걸쳐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이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 업의 통일성을 유자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라어 공사비용 (장바잡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알웨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상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잡가장비교체비용	아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 -단, 집가장비교체 비용은 20% 부담	총 부담액의 40%)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sup>①</sup>	주요 내용 <sup>②</sup>	지원조건 <sup>③</sup>	지원기간	지원금액 <sup>④</sup>	비고(5)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sup>①</sup>	절 차 <sup>②</sup>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점포개발팀 (02-3281-3688)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기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점포개발팀 (02-3281-3688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요거베리]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요거베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요거베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일	-	최초계약 시 이수 / 신규오픈시 무료교육
보수 교육	_	실비적용 / 사전협의	가맹사업자 요청시 또는 필요시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2조에 따라 7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sup>①</sup> 운영 현황 (신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ĺ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0 0	. ,

지]	영점	었으
$\neg$	$\cap$	HI I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직영점 미운영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sup>®</sup>
해당 <sup>(</sup>	없음 (직영점 없음)

### [별첨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1) 2021년도

## 2) 2022년도

## 3) 2023년도

### 1) 2021년도

## 2) 2022년도

### 3) 2023년도

## [별첨2] 매출액 근거자료

- 1. 가맹점 관련 매출근거
- 1) 2021년 가맹점 매출관련- 해당없음
- 2) 2022년 가맹점 매출관련해당없음
- 3) 2023년 가맹점 매출관련- 해당없음
- 2. 요거베리 영업점 현황 [2023년 말 기준]

순번	점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계약체결일
1			운영중인 가맹점 없음		
2					
3					